

#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모경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18.

발의자 : 모경종 · 이용우 · 민병덕

김현정 · 김한규 · 황정아

박범계 · 김윤 · 김동아

송재봉 · 남인순 · 김교홍

정진욱 · 이준석 · 이광희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,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.

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,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.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·군·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폐기물 매

립량에 비례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74호) 및 「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7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2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폐기물”이라 한다)

제143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폐기물: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자

제144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폐기물: 폐기물매립시설의 소재지

제14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폐기물: 폐기물 매립량 톤당 6천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)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하는 폐기물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2조(과세대상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 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것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~ 다. (생 략)</li> </ol> </li> </ol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42조(과세대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-----</li> </ol> <p>---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폐기물 매립시설에 매립 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폐기물”이라 한다)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3조(납세의무자)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 략)</li> <li>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: 다음 각 목의 자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~ 다. (생 략)</li> </ol> </li> </ol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43조(납세의무자) -----</p> <p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-----</li> </ol> <p>-----</p> <p>--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폐기물: 폐기물매립시설</p>

		<u>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자</u>
3. (생 략)		3. (현행과 같음)
제144조(납세지)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.		제144조(납세지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	1. (현행과 같음)
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납세지		2. ----- -----
가. ~ 다. (생 략)	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라. 폐기물: 폐기물 매립시설
3. (생 략)		<u>의 소재지</u>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생 략)		3. (현행과 같음)
②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.		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	4. 폐기물: 폐기물 매립량 톤당
③ ~ ⑤ (생 략)		<u>6천 원</u>
		③ ~ ⑤ (현행과 같음)